

제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9. 2.13.(수) 09:3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이효성 위 원 장
김석진 부위원장
표철수 상임위원
허 욱 상임위원
고삼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기에 대한 경례

③ 개회선언

④ 지난 회의록 확인

- 제5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⑤ 서면회의 결과보고

- 제6차 서면회의 결과, <의결안건> 1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함
- 제6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⑥ 회의공개 여부 결정

-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함

7] 의결사항

가. 「방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(2019-07-026)

- '「방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'에 대해 장봉진 방송정책기획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 - 수신료 체납 가산금 인하 및 면제 절차 간소화 등으로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*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
- * 주요내용 : 수신료 부과자의 수신료 감액제도 고지 강화, 수신료 체납 가산금 인하 (5%→3%), 수신료 면제절차 간소화, 수상기 미소지자의 수신료 환급 근거 신설 등

8] 보고사항

가. 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 등에 관한 사항

- '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 등에 관한 사항'에 대해 곽진희 이용자정책총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 -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, 부가통신사업자의 음란정보 유통방지 의무 부과, 전기통신역무 중단시 손해배상 규정 신설 등 「전기통신사업법」 2건이 개정('19.6.12, '19.6.25. 시행)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*」 및 하위 고시(「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」, 「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」 개정안을 원안대로 접수함
- *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: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,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시 이용자 통지규정 마련, 비필수앱 삭제 부당 제한 행위 관련 금지행위 규정 개정, 진입 규제 완화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

나. 「통신 이용자보호 종합계획(안)」에 관한 사항

- '「통신 이용자보호 종합계획(안)」에 관한 사항'에 대해 곽진희 이용자정책총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 - 4차 산업혁명 등 ICT환경변화에 따라 사업자규제 중심에서 이용자중심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여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3개년('19~'21년) 중장기 정책방안을 담은 「통신 이용자보호 종합계획*」에 대해 원안대로 접수함
- * 주요내용 : ▲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이용자 중심의 보호체계 확립,

▲ 이용자 역량 및 권리 강화, ▲ 상생협력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으로 이용자 편익 제고, ▲ 지능정보화시대 이용자 보호 체계 정립의 4대 목표별로 8대 전략, 21개 과제를 선정

다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등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- ‘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등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’에 대해 최선경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 -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(‘18.6.12 공포, ‘19.6.13* 시행/’18.12.24. 공포, ‘19.6.25 시행**)에 따라,
 - *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의무화
 - **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관련 방통위의 시책 마련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만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
 - ‘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(공제)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의 기준’, 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 지원 등 시책 마련에 필요한 사항’ 및 ‘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’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및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접수함

9] 기 타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회의는 2월 20일(수)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함

6. 폐 회 (11:04)